

계약금액 조정

충 청 북 도



물 가 변 동

설 계 변 경

기 타 변 경



건설계약 일반



계약 개요

계약의 특징

- 사법상의 계약
- 쌍무계약

계약의 원칙

- 계약자유 원칙
- 신의성실 원칙
- 사정변경 원칙
- 권리남용금지 원칙

계약의 체결

- 청약과 승낙
- 계약의 요식성
- 계약서 날인



계약 형태

확정계약



개산계약

총액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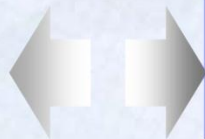
단가계약

장기계속



단 년도

단독계약



공동도급



입찰 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국가기관(추정가격)	지자체(추정가격)	근거법령
조달청 의무 계약요청	종합건설공사 : 30억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 3억 이상	자율 (원가사전검토:100억원 이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15조의2
최저가 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	300억 이상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	300억 미만 공사	300억 미만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지역제한	종합건설공사:95억 미만(고시금액)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7억미만(준정부기관 종합공사: 150억미만)	종합공사 : 100억 미만 전문공사 : 7억 미만 전기,통신,소방,문화재 : 5억 미만 <혁신도시> 종합공사 : 100억미만 전문공사 : 10억미만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국가기관(추정가격)	지자체(추정가격)	근거법령
시공능력 (설적)제한	종합건설공사:30억 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3억 이상	종합건설공사 : 30억 이상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3억 이상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지역의무 공동도급	고시금액미만(95억) (준정부기관 284억미만)	284억 미만 (기초지자체, 울산광역시는 모든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국제입찰	95억원 이상(준정부기관 284억 이상)	284억 이상	기획재정부 고시2010-34 행안부 고시 2010-88호
소액수의 계약	종합공사 : 2억 이하 전문공사 : 1억 이하 기타공사 : 8천만원 이하	종합공사 : 2억 이하 전문공사 : 1억 이하 기타공사 : 8천만원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계약시 여성기업간 견적경쟁	종합건설공사 : 1억 이하 전문공사 : 5천만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 4천만원이하		조달청 내부지침
지명경쟁	종합공사 : 3억 이하 전문,전기,통신,소방 : 1억이하	종합공사 : 3억 이하 전문공사 : 1억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2조



입찰 및 계약방법

입찰 및 계약방법	국가기관(추정가격)	지자체(추정가격)	근거법령
내역입찰	100억 이상	100억 이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물량내역 수정 입찰	500억 이상	500억 이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PQ심사	200억~300억 18개 공종공사 300억 이상 공사, 일괄, 대안공사	200억~300억 18개 공종공사 300억 이상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13조 사전심사기준 제2조 지방계약법시행령14조 행안부 제329호
현장설명	300억 이상의 공사는 실시의무(단 서조항 생략가능: 기획재정부령)	모든 공사 의무(단서조항으로 생략 가능)	국가계약법시행령 14조의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현장설명 불참시도 입찰참가자격부여(참가 임의) (예규 입찰유의서 제6조에서 삭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공사 현장설명시 의무참석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제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물가 변동



물가변동 관련 규정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법 률	제 19 조	제 22조
시행령	제 64 조	제 74 조
시행규칙	제 74 조	제 73 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2 장	제19조 ~ 제2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 조	제19조 ~ 제24조



변경사유





변경사유

■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

- 90일 이상 경과
- 3% 이상 증감

■ 원자재 가격변동

- 공사,용역,물품제조: 5%, 3%(사유)
- 물품공급:10%, 6%(사유)

물가변동

■ 환율변동

- 90일 이상 경과
- 3% 이상 증감

■ 특정자재 가격급등(단품)

- 특정자재 15% 이상 증감



조정 개요

조정 의무

- 조정요건 충족 ➡ 증액, 감액 불문하고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국가계약법에 위배

방법 명시

- 계약서에 조정방법 명시(지수조정율 , 품목조정율)
- 동일 계약에서 동시에 적용 할 수 없음
- 이행 도중 변경 할수 없음 (일관성 유지)
- 조정방법 명시가 없는 경우 : 합의하여 정함, 이후 동일 방법



조정 청구

증액 청구

- 계약상대자의 청구(관계서류 첨부), 단순공문은 안됨
-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 확인후 조치
-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 하여야 한다

감액 청구

- 조정요건 충족 ➡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감액금액 조정
. 조정요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기관에 위탁
. 감액조정금액이 위탁수수료보다 낮은 경우 : 생략 가능
- 총액감액과 단품감액 동시 충족 ➡ 총액감액 우선 적용
- 총액감액 또는 단품감액 ➡ 하수급인 동일배분으로 회수
- 총액증액과 단품증액 동시 충족 단품증액 못한 경우
➡ 단품감액 적용안함
- 단품의 경우 재료비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조정신청의 보완과 반려의 차이 ?

- 반려할 경우 : 보완하여 접수한 재접수일을 조정신청일로 인정
- 보완할 경우 : 당초 접수일을 조정신청일로 인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발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검토결과 조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을 변경만으로도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 신

반려 근거

-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에 의하여 청구 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며

신청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적용지수 등 동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면 반려할 수 있을



조정 요건

조 정 기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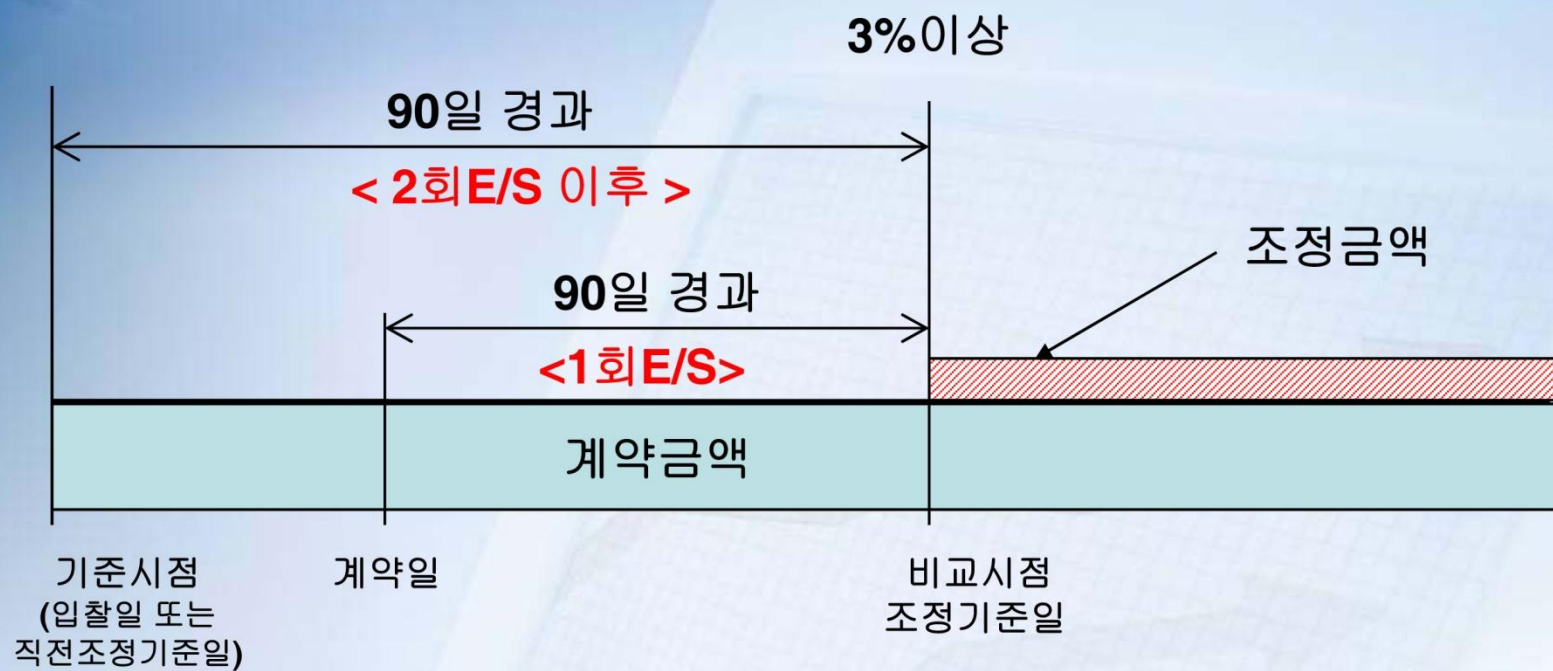
- 기간요건(**90일** 이상 경과) 와 조정율(**3%**) 동시 충족일
- 임의 선택일이 아님
(자동정해짐, 조정신청, 조정일, 지급일 등과 무관)

기 간 (90일)

- 1차 조정은 **계약체결일** (장기공사 : 1차 체결일)
- 2차 이후는 직전조정일 기준
- 익일 기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

조정율 (3%)

- 1차 조정은 **입찰일** (수의계약 : 계약체결일)
- 2차 이후는 직전조정일 기준
-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품목(지수)조정율 3% 증감



공 사 명	기준시점	최초시점(A)	업체신청 (B)	금액차이(A-B)
국도대체우회 도로 건설공사	08.5.31	08. 8. 30 (90일, 3.09%)	08.9.1(92일, 4.40%)	1,062,366,000원 (1.31%)
고속도로 건설 공사(1공구)	08.4.30	08. 8. 26. (117일, 3.00%)	08.9.1(123일,4.69%)	57,616,000원 (1.69%)
고속국도 건설 공사(7공구)	08.4.30	08. 8. 23. (114일, 3.09%)	08.9.1(123일,4.57%)	159,061,000원 (1.48%)

공 사 명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년 월 일	08.5.31	08.9.1	08.8.31	08.8.30
경 과 일		(92일)	(91일)	(90일)
조정율(K치)		4.40%	2.77%	3.09%
조 정 금 액		3,568,253,000원		2,505,887,000원
조정기준일		업체 신청일	조달청 검토	감사원 확인

공사명	고속도로 건설공사(1공구)				
구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년월일	08.4.30	08.9.1	'08.8.31	08.8.30	08.8.26
경과일		(123일)	(122일)	(121일)	(117일)
조정율(K치)		4.69%	2.80%	3.04%	3.00%
조정금액		330,229,000원			272,613,000원
조정기준일		업체신청일	조달청검토		감사원 확인

공사명	고속국도 건설공사(7공구)				
구 분	기준시점	비 교 시 점			
년월일	08.4.30	08.9.1	'08.8.31	08.8.30	08.8.23
경과일		(123일)	(122일)	(121일)	(114일)
조정율		4.57%	2.92%	3.15%	3.09%
조정금액		491,156,000원			332,095,000원
조정기준일		업체신청일	조달청검토		감사원확인



조정 방법

조 정 대 가

- 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함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 승인된 수정예정공정표에 의한다
- 조정기준일전 이행완료 부분
계약대상자 귀책사유(제외),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포함)
-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

선 금 공 제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1- 선금지급율)
- 계약금액조정 = 계약금액 + 조정금액
- 물가상승 (선금공제), 물가하락 (선금공제 안함)

기성금 공 제

- 조정일 이후 기성(준공)대가 지급 금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
- 감액통보후 개산지급한 기성(준공)대가는 적용대가에 포함

조정신청일과 기성금의 관계



조정신청일 이후 [③]시점 에 기성수령 시 : 물가변동대상 금액에 **포함**

조정신청일이전[②]시점 에 기성수령 시 : 물가변동대상 금액에서 **제외**

❖ 계약담당공무원의 개산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형식상(?) 개산급으로 물가변동에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

② 시점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제외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사실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

- 개산급 증빙하는 구체적인 사유
- 개산급에 의한 기성검사를 실시한 내용
 - 개산급에 의한 지출명세서
 - 감사원에 보고한 자료
- 사후정산 또는 설계변경 확정내용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을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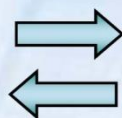
잔여
물량

- 예정 공정표



가격
산정

- 기준시점 가격산정
- 비교시점 가격산정



적용
기준

- 일관성 유지



등락
산정

- 등락율 산정
- 등락폭 산정



조정
금액

- 변경서류준비



금액
조정

- 계약내용변경



품목조정을 산식

■ 산식

- $\text{등락율} = (\text{비교시점가격} - \text{기준시점가격}) / \text{기준시점가격}$
 - $\text{등락폭} = \text{계약단가} * \text{등락율}$
 - $\text{조정율} = \text{합(등락폭)} / \text{물가변동 조정대가} \Rightarrow 3\% \text{ 검증}$
 - $\text{조정금액} = \text{물가변동 적용대가} * \text{조정율}$
-
- 기준시점 :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
 - 비교시점 : 조정기준(90일, 3% 충족일)
 - 가격일관성 유지(가격정보지, 물가지 가격, 기타)



등락폭 산정

계약단가

기준시점

비교시점

등락폭 = 계약가격 * 등락율

(계약단가 + 등락폭) ≤ 비교시점 가격

계약단가

기준시점

비교시점

등락폭 = 비교시점가격 - 계약단가

계약단가

기준시점

비교시점

등락폭 = 0



품목조정율 (예시)

구분		계약			대가부분		등락검토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입찰일	기준일	등락율	등락폭	
재료비	재료A	20	90	1,800	10	900	100	120	0.20	180	계약 < 기준 < 비교 계약단가*등락율
	재료B	40	210	8,400	20	4,200	200	240		600	기준 < 계약 < 비교 비교단가-계약단가
	재료C	20	370	7,400	10	3,700	300	360		0	기준 < 비교 < 계약 등락폭 = 0
	재료D	10	80	800	5	400	100	90	-0.10	-40	
	재료E	10	210	2,100	5	1,050	200	180	-0.10	-105	
	소계			20,500		10,250				635	
노무비	노무A	80	280	22,400	40	11,200	300	390	0.30	3,360	
	간노										
	소계			25,760		12,880				3,864	
경비				90						18	
일반관리비				2,781		1,388				271	
이윤				4,295		2,140				623	
총원가				53,426		26,658				5,411	
부가가치세				5,343		2,666				541	
총계				58,768		29,324				5,952	20.3% 상승 = 5,952 / 29,324



금액 조정

조
정
금
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x 변동율 (20.3%)
= 29,324 x 0.203 = 5,952

선
금
공
제

- 선금공제 = 조정금액 * (1 - 선급지급율) , 지급율70%가정
= 5,952 x (1 - 0.7)

금
액
조
정

- 금액조정 = 계약금액 + 조정금액
- 금액조정 = 계약금액 + 29,324 * 0.203 * (1 - 0.7)



지수조정율



비목군 분류

비 목 군	해 설
A. 노무비	통계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일반공사 노무비 평균값
B. 기계경비	공사, 국산기계경비(B'), 외국산기계경비(B'')
C. 광산품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지수
D. 공산품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지수
E. 전력수도가스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지수
F. 농림수산물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지수
G. 실적공사비	공사, 대한건설협회 실적공사비, 토목(G1), 건축(G2), 기계(G3)
H. 산재보험료	국토해양부
I. 산업안전관리비	노동부
J. 고용보험료	국토해양부
K. 퇴직공제부금	국토해양부
L. 국민건강보험료	국토해양부
M. 국민연금보험료	국토해양부
Z. 기타 비목군	



비목계수 산출

비 목 군	계수(가중치)	산 출 식
A. 노무비	a	= 비목군(A) 금액합계 / 순공사비
B. 기계경비	b	= 비목군(B) 금액합계 / 순공사비
C. 광산품	c	= 비목군(C) 금액합계 / 순공사비
D. 공산품	d	= 비목군(D) 금액합계 / 순공사비
E. 전력수도가스	e	= 비목군(E) 금액합계 / 순공사비
F. 농림수산물	f	= 비목군(F) 금액합계 / 순공사비
G. 실적공사비	g	= 비목군(G) 금액합계 / 순공사비
H. 산재보험료	h	= 비목군(H) 금액합계 / 순공사비
I. 산업안전관리비	i	= 비목군(I) 금액합계 / 순공사비
J. 고용보험료	j	= 비목군(J) 금액합계 / 순공사비
K. 퇴직공제부금	k	= 비목군(K) 금액합계 / 순공사비
L. 국민건강보험료	l	= 비목군(L) 금액합계 / 순공사비
M. 국민연금보험료	m	= 비목군(A) 금액합계 / 순공사비
Z. 기타 비목군	z	= $1 - \sum(\text{비목계수})$



비목지수 및 조정을 산출

비 목 군	계수	기준시점지수	비교시점지수	지수조정을
A. 노무비	a, a'	A0	A1	$= a \times A1 / A0$
B. 기계경비	b	B0	B1	$= b \times B1 / B0$
C. 광산품	c	C0	C1	$= c \times C1 / C0$
D. 공산품	d	D0	D1	$= d \times D1 / D0$
E. 전력수도가스	e	E0	E1	$= e \times E1 / E0$
F. 농림수산물	f	F0	F1	$= f \times F1 / F0$
G. 실적공사비	g	G0	G1	$= g \times G1 / G0$
H. 산재보험료	h	$H0 = \text{기준율} \times A0$	$H1 = \text{변동율} \times A1$	$= h \times H1 / H0$
I. 산업안전관리비	i	$I0 = \text{율} \times (a' + c + d + e + f)$	$I1 = \text{율} \times (a'1 + c1 + d1 + e1 + f1)$	$= i \times I1 / I0$
J. 고용보험료	j	$J0 = \text{기준율} \times A0$	$J1 = \text{변동율} \times A1$	$= j \times J1 / J0$
K. 퇴직공제부금	k	$K0 = \text{기분율} \times A0$	$K1 = \text{변동율} \times A1$	$= k \times K1 / K0$
L. 국민건강보험료	l	$L0 = \text{기준율} \times A0$	$L1 = \text{변동율} \times A1$	$= l \times L1 / LA0$
M. 국민연금보험료	m	$M0 = \text{기준율} \times A0$	$M1 = \text{변동율} \times A1$	$= m \times M1 / M0$
Z. 기타 비목군	z	$Z0 = (a \times A0 + c \times C0 + \dots + f \times F0) / 5$	$Z1 = (a \times A1 + c \times C1 + \dots + f \times F1) / 5$	$= z \times Z1 / Z0$



지수조정을(예시)

비목	적용대가	① 계수	② 기준시점지수	③ 비교시점지수	④ 지수변동율	⑤ 비목군조정계수
① 노무비 합계	3046	0.3046				0.31583974
㉠직접노무비(A)	2735	0.2735	100.00	103.69	1.0369	0.28359215
㉡간접노무비(A')	311	0.0311	100.00	103.69	1.0369	0.03224759
② 경비합계	929	0.0929				0.09329468
㉠국산기계경비(B')	618	0.0618	100.00	100.00	1.0000	0.0618
㉡외산기계경비(B'')	88	0.0088	100.00	96.68	0.9668	0.00850784
㉢기타비목군(Z)	223	0.0223	100.00	103.08	1.0308	0.02298684
③ 재료비합계	5190	0.519				0.53323508
㉠광산품(C)	290	0.0290	121.90	133.60	1.0959	0.03178110
㉡공산품(D)	4867	0.4867	114.00	116.70	1.0236	0.49818612
㉢전력수도가스(E)	4	0.0004	119.10	125.60	1.0545	0.00042180
㉣농림수산물(F)	29	0.0029	118.70	116.50	0.9814	0.00284606
④ 실적공사비합계						
㉠토목실적공사비(G1)			100.00	99.45	0.9945	
㉡건축실적공사비(G2)						
㉢기계실적공사비(G3)						
⑤ 제경비합계	835	0.0835				0.08917474
㉠산재보험료(H)	85	0.0085	100.00	115.88	1.1588	0.00984980
㉡안전관리비(I)	143	0.0143	100.00	103.37	1.0337	0.01478191
㉢고용보험료(J)	31	0.0031	100.00	103.69	1.0369	0.00321439
㉣퇴직공제부금(K)	48	0.0048	100.00	143.80	1.4380	0.00690240
㉤국민건강보험료(L)			100.00	110.40	1.1040	
㉥국민연금보험료(M)			100.00	103.69	1.0369	
㉦기타경비(Z)	528	0.0528	100.00	103.08	1.0308	0.05442624
㉧기타잡비(N)			100.00	100.00	1.0000	
수공사비	10000	1.0000				1.03154424
지수조정율(K)	지수조정율(K) = (비목군조정계수 합계 - 1) × 100					3.15%



금액 조정

조
정
금
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x 변동율 (3.15%)
= 10,000 x 0.0315 = 315

선
금
공
제

- 선금공제 = 조정금액 * (1 - 선급지급율) ※ 지급율 70% 가정
= 315 x (1 - 0.7)

금
액
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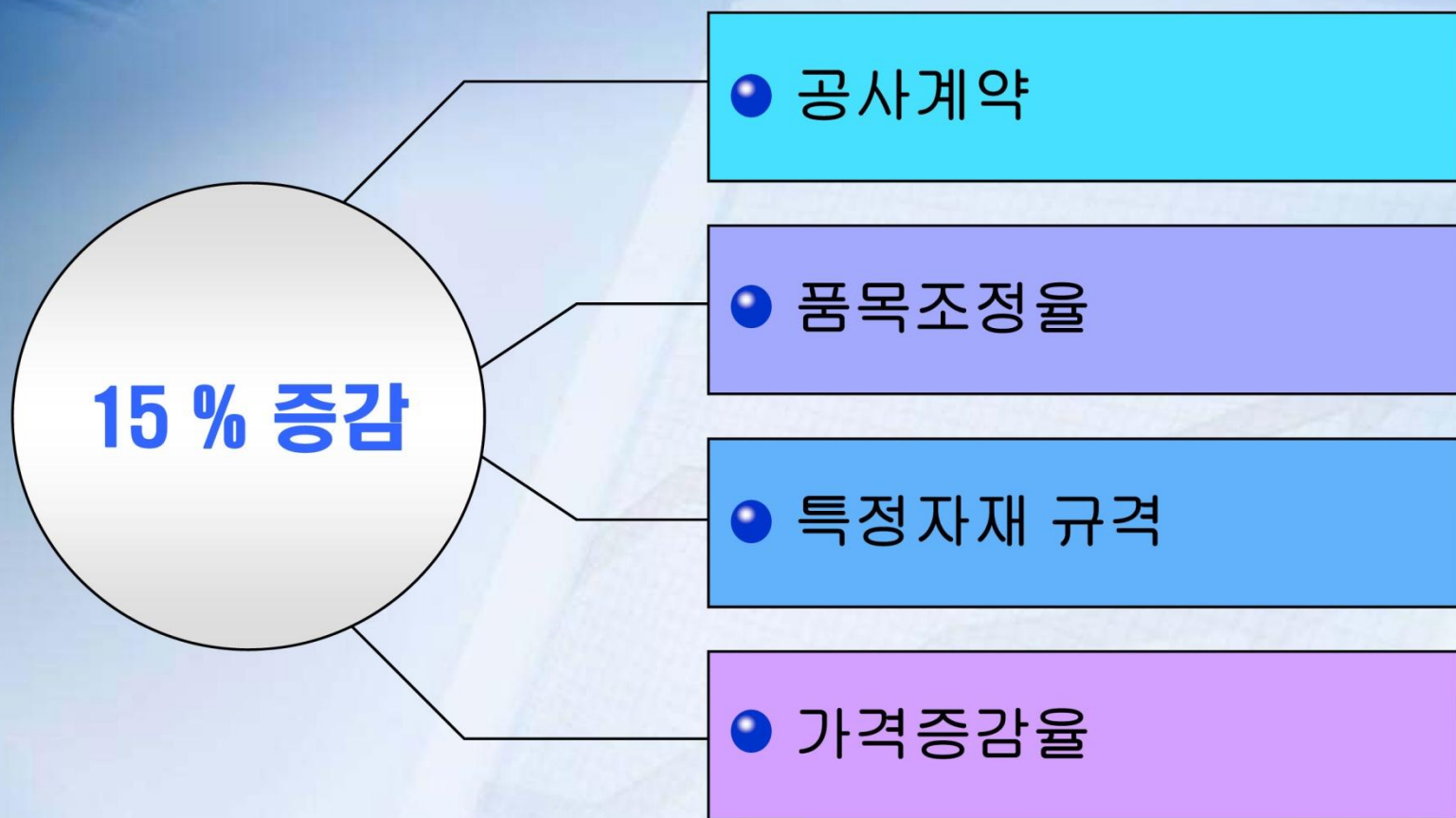
- 금액조정 = 계약금액 + 조정금액
- 금액조정 = 계약금액 + 10,000 * 0.0315 * (1 - 0.7)



특정규격 가격변동



특정규격 가격변동 사유





단품조정후 물가변동 조정

조정
기준

■ 가격변동 산정

- 단품품목 : 단품조정일 → 전체조정일
- 이외품목 : 입찰일(직전조정일) → 전체조정일

조정
방법

- 품목조정을 준용, 단품 지수상승율(15%) 공제

- 전체 물가변동을 산출 = $d * (D2/D0)$
= $d1 * (D2/D1 - 15/100) + d2 * D2/D0$





단품조정후 지수조정을(예시)

비목	적용대가	계수	기준시점지수	비교시점지수	지수변동율	비목군조정계수
① 노무비 합계	3046	0.3046				0.31583974
㉠직접노무비(A)	2735	0.2735	100.00	103.69	1.0369	0.28359215
㉡간접노무비(A')	311	0.0311	100.00	103.69	1.0369	0.03224759
② 경비합계	929	0.0929				0.09329468
㉠국산기계경비(B')	618	0.0618	100.00	100.00	1.0000	0.0618
㉡외산기계경비(B'')	88	0.0088	100.00	96.68	0.9668	0.00850784
㉢기타비목군(Z)	223	0.0223	100.00	103.08	1.0308	0.02298684
③ 재료비합계	5190	0.519				0.53323508
㉠광산품(C)	290	0.0290	121.90	133.60	1.0959	0.03178110
㉡공산품(D1)	348	0.0348	d1=(115.5)	116.70	0.8603	0.02993844
㉢공산품(D)	4519	4.4519	114.00	116.70	1.0236	0.46256484
㉣전력수도가스(E)	4	0.0004	119.10	125.60	1.0545	0.00042180
㉤농림수산물(F)	29	0.0029	118.70	116.50	0.9814	0.00284606
④ 실적공사비합계						
㉠토목실적공사비(G1)			100.00	99.45	0.9945	
㉡건축실적공사비(G2)						
⑤ 제경비합계	835	0.0835				0.08917474
㉠산재보험료(H)	85	0.0085	100.00	115.88	1.1588	0.00984980
㉡안전관리비(I)	143	0.0143	100.00	103.37	1.0337	0.01478191
㉢고용보험료(J)	31	0.0031	100.00	103.69	1.0369	0.00321439
㉣퇴직공제부금(K)	48	0.0048	100.00	143.80	1.4380	0.00690240
㉤국민건강보험료(L)			100.00	110.40	1.1040	
㉥국민연금보험료(M)			100.00	103.69	1.0369	
㉦기타경비(Z)	528	0.0528	100.00	103.08	1.0308	0.05442624
㉧기타잡비(N)			100.00	100.00	1.0000	
순공사비	10000	1				1.02586140
지수조정율(K)	지수조정율(K) = (비목군조정계수 합계 - 1) × 100					2.58%



원자재 가격급등



조정 요건

공사, 용역
물품 제조

- 품목(지수)조정을 5%
- 품목(지수)조정을 3% + 객관적 사유

물품 구매

- 품목(지수)조정을 10%
- 품목(지수)조정을 6 % + 객관적 사유



조정 사유

객관적 사유

-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 환율급등, 하도급파업 등으로 계약수행이 곤란
- 계약이행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 제재조치가 비용상 더 유리한 경우
- 주요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일반공사 설계변경



실제변경 관련 규정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법 률	제 19 조	제 22조
시행령	제 65 조	제 74 조
시행규칙	제 74 조 2	제 73 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 조	제19조 ~ 제2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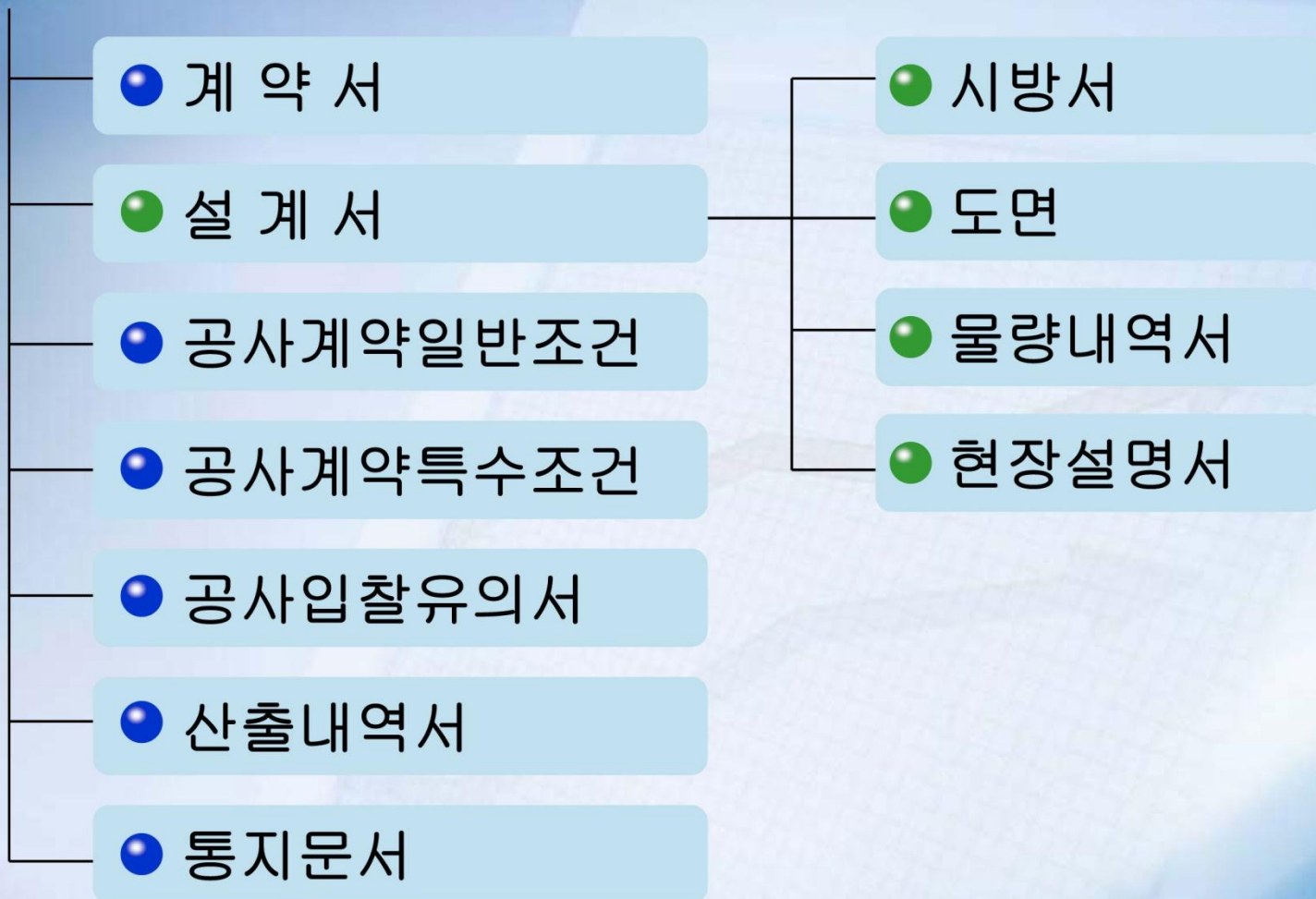
설계변경 관련 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	지자체	내 용
제19조	제19조	설계변경 등
제19조의2	제20조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에 의한 변경
제19조의3	제21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변경
제19조의4	제22조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5	제23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	제24조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제20조	제2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	제27조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계약문서의 구성

계약문서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기

구분	입찰 방법	내역작성	제출시기	국가법	지방법
일반	최저가입찰 (300억 이상)	물량내역서	입찰시	제14조	제15조
	내역입찰 (100억 이상)	물량내역서	일찰시	제14조	제15조
	총액입찰 (100억 미만)	물량내역서	착공계	제14조	제15조
수의	수의계약 (2천 ~ 2억)	물량내역서	착공계	제30조	-
	수의계약 (2천 미만)	물량내역서	착공계	제26조	제25조
대형	최저가입찰 (신기술,신공법)	직접	입찰시	제14조	-
	일괄입찰 (턴키)	직접	실시설계	제78조	제94조
	대안입찰 (원안)	물량내역서	입찰시	제78조	제94조
	대안입찰 (대안)	직접	입찰시	제78조	제94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직접	실시설계	제98조	제126조
	기술제안입찰	직접	실시설계	제98조	제126조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 요구

-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
 - 공사비 절감효과
 - 시공기간 단축효과

발주기관 요구

(계약자 책임없는 사유 포함)

- 설계서 상이
 -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 용수, 지질, 지하 매설물
- 발주기관 요구
 - 추가공사 또는 특정공종삭제
 - 공정계획 변경
 - 시공방법 변경
 - 적절한 공사이행을 위한 변경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에 의한 변경



불분명

- 설계자 의견 청취, 단가 및 수량산출서 검토
 - 확인사항 대로 시공 (금액변경 없음)
 - 확인사항 다르게 시공 (설계보완, 금액조정)



누락, 오류

- 조사 및 사실확인
 - 설계서 보완 (기능, 안전확보)



상호모순

- 물량내역서 상이
 - 도면, 시방서와 물량내역서 일치
- 모두상이(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 도면, 시방서 우선순위 확정 후 물량내역서 일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

● 현장상태 보고서 작성(지질, 용수, 매설물)

- 공사감독관 또는감리자 보고
- 계약담당공무원 보고



계약담당자

● 현장 상태조사, 사실확인

- 설계서 변경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상대자

● 설계변경 요청

- 신기술, 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사항 구체적인 설명서, - 산출내역서
 - 공사비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효과, - 수정공정표



계약담당자

● 설계변경 요청서 검토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설계변경 요청서 검토 (타당성)
- 필요시 심의요청(중앙건설기술심의, 설계자문위원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담당자

● 설계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
- 특정 공종 추가 또는 삭제 변경
- 시공방법 변경
- 적정한 공사이행을 위한 변경



계약상대자

● 설계변경 요청서 검토

- 공사의이행 상황
- 자재의 수급상황

● 이행가능여부 통보

- 공사의이행 상황
- 자재의 수급상황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개의 타고난 용맹성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개의 지능 우수성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개의 대단한 의지력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의 유용함

제 집 개도 밟으면 문다



개도 성깔 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개의 천진난만한 성격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짖는다



제때 개밥을 안주면 화를 입는다

달보고 짖는 개



개에게도 감수성이 있다

무는개는 짖지 않는다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개

죽 썬 개 좋은 일 시켰다



기다리지 않던 복이 굴러옴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관 급 ▶ 사 급

계약상대자

- 관급자재 공급지연 (공기지연)
 - 직접자재구입 신청 (사급자재)
 - 대체사용승인 신청

계약담당공무원

- 사용승인
 - 기성(준공)대가에 합산 지급
 - 현품반환 (지정 장소,일시)

사 급 ▶ 관 급

- 원칙적으로 전환 불가
- 계약목적 이행에 불가피 한경우
 - 설계변경 증가량 적기공급 불가
 - 원자재 가격 급등, 전환 불가피

- 계약금액 조정
 - 신규비목(변경당시 산정단가)
 - 제비율(산출내역서, 법정율 내)



설계변경 절차도 [발주기관 요청]

**발주
기관**

- 사업계획변경



**감리
감독**

- 변경내용 검토
- 도서작성, 금액산출



**발주
기관**

- 방침결정
- 예산확보



**감리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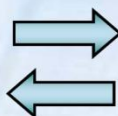
- 변경서류준비



**발주
기관**

- 계약내용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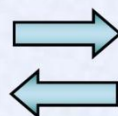
구조적 안정성 검토 필요시



의견통보

**설계
자**

- 구조, 안전성검토
- 변경(안)검토



**계약
업체**

- 설계변경합의
- 변경시공계획수립



설계변경 절차도 [계약대상자 요청]

계약
업체

- 설계변경 보고서
- 신기술, 신공법 등



감리
감독

- 변경내용 검토



발주
기관

- 현장 확인
- 설계심의의뢰



감리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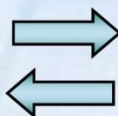
- 변경서류준비



발주
기관

- 계약내용변경

구조적 안정성 검토 필요시



의견통보

설계
자

- 구조, 안전성검토
- 변경(안)검토



설계변경 계약금액의 조정 [단가적용]

구 분	계약상대자	발주기관 (계약자 책임없는 사유 포함)
감소물량	● 계약단가	● 계약단가
증가물량	● 낮은단가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 협의단가 (산정단가*낙찰율), 산정단가 협의불가 (산정단가*낙찰율)+산정단가/2
신규비목	● 산정단가*낙찰율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당시]

설계변경 당시



도면변경 없는 경우

(문서로 변경합의 한 때)

도면변경 있는 경우

(발주기관 확정 한 때)

우선시공 한 경우

(우선시공 한 때)



계약금액 조정 [예정가격 단가]

예 정 가 격

●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 조사 통보한 가격

전문조사기관 조사 공표한 가격

2이상 사업장 직접 거래실례 조사한 가격

● 원가계산가격

재 료 비

거래실례가격

● 실적공사비

노 무 비

통계법 지정기관 공표

● 감정,견적가격
유사거래실례

경 비

재정부 별도 정한가격

일반관리비

중앙관서장 조사공표

이 윤

견적,감정,유사거래



계약금액 조정 [협의단가]

산정단가



(산정단가* 낙찰율)

협의단가

발주기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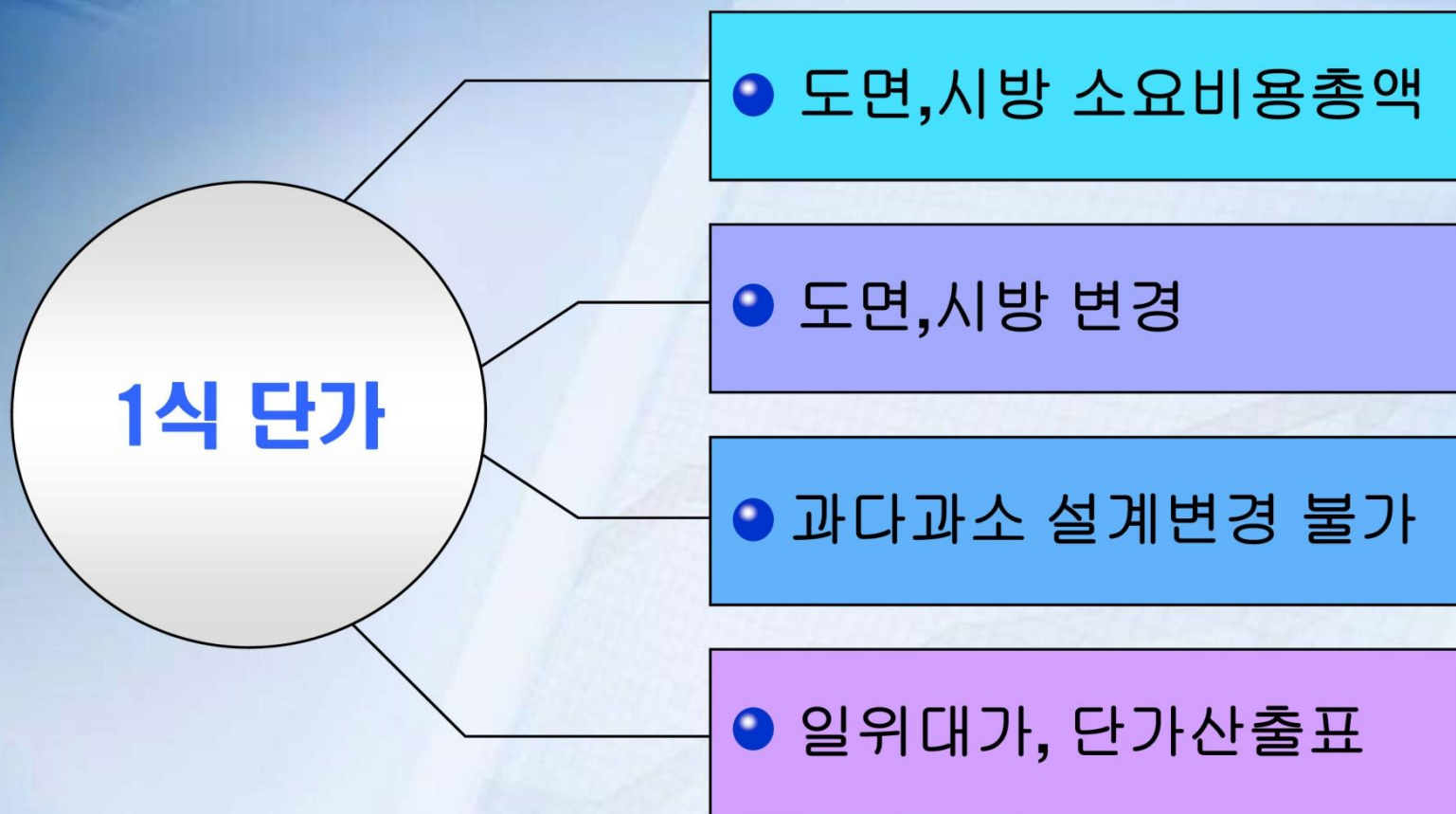
현장상태 상이

설계누락오류

내역서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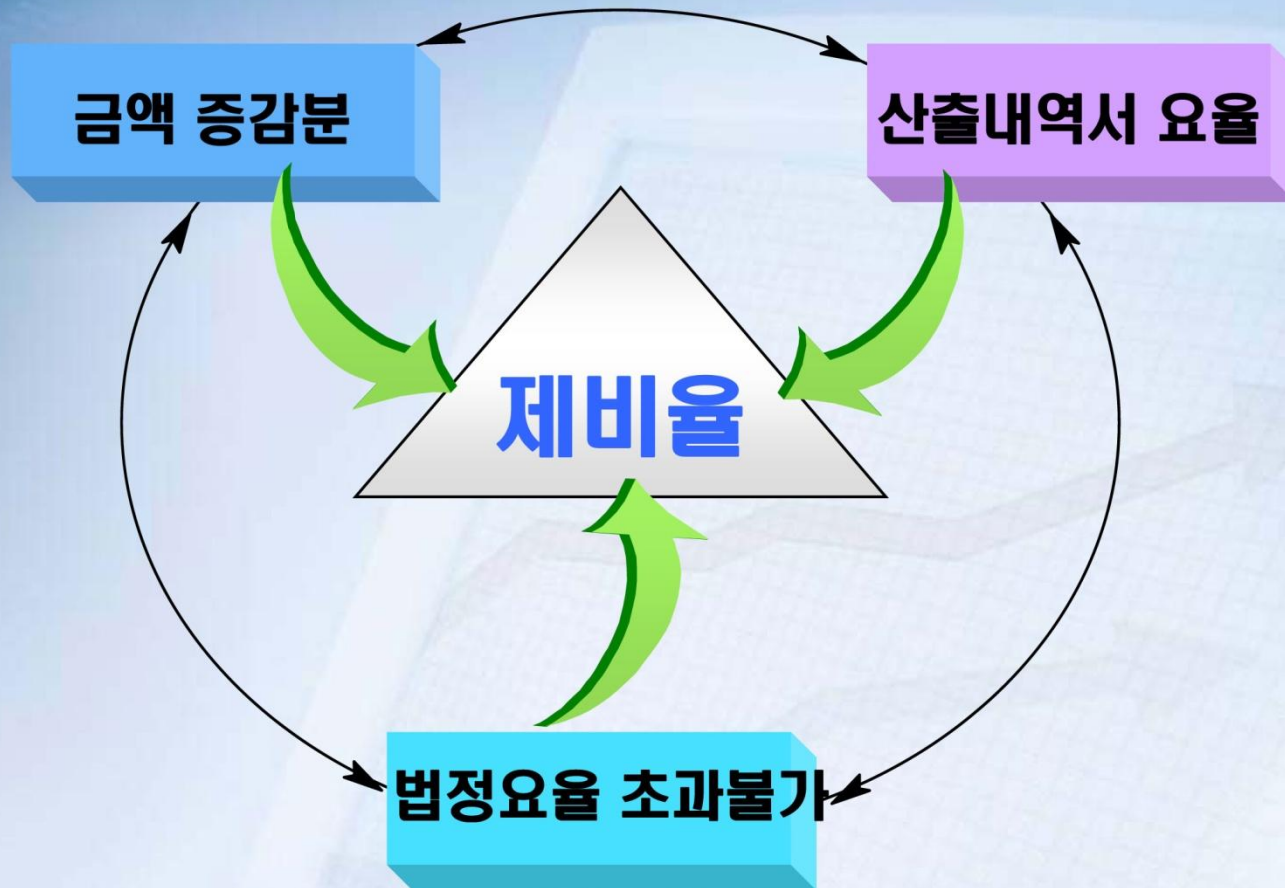


계약금액 조정 [1식 단가]





계약금액 조정 [제비율 적용]





계약금액 조정 (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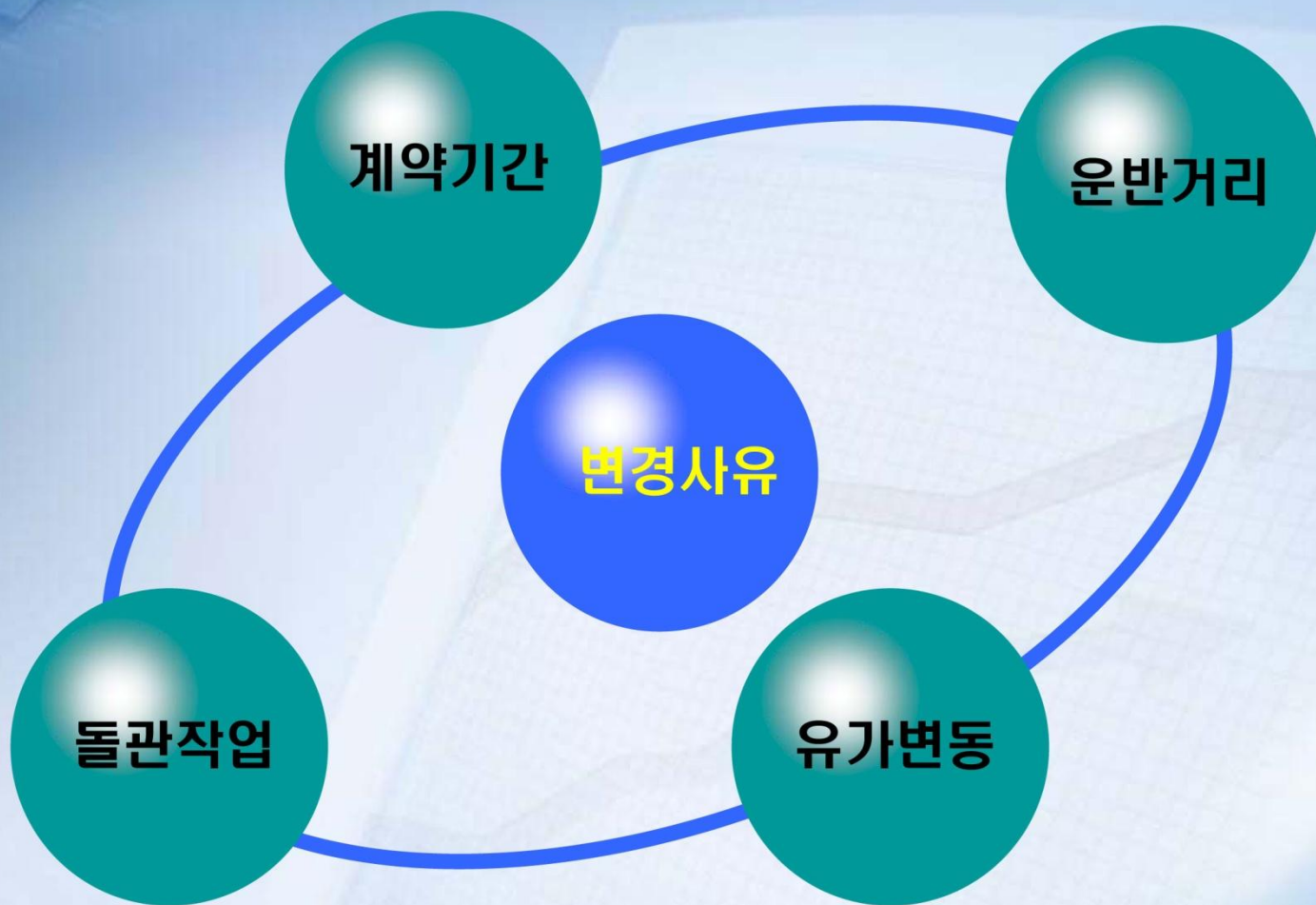
경비항목	금액산출	관련규정	발표부서	적용기준	비고
간접노무비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노무비*율	고용고용법	국토해양부	2천만원 이상	
산재보험료	직노*율	보험료징수법	국토해양부	2천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직노*율	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1개월 이상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직노*율	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1개월 이상	정산
퇴직공제부금	직노*율	건설산업기본법	국토해양부	10억원 이상	정산
산업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4천만원 이상	정산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율	건설기술관리법			정산
하도급지급보증	(재+직노+경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정산
공사이행보증	(재+직노+산경)*율			300억 이상	
일반관리비	(재+노+경)*율				
이윤	(노+경+일)*율				



기 타 변 동



변경사유





기타 계약금액 변경

계약 기간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 불가능한 경우**
 - 계약기간 종료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조치
- **설계변경 사유가 계약기간 후 종료된 경우**
 - 공사지체산입 안함,
 - 사유종료 즉시 계약금액 및 기간 조정



조정

- 계약기간 조정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반영
- 계약서 제비율 적용(법정비율 내 적용)



기타 계약금액 변경

운반
거리

- 당초 운반거리에 일부 추가 되는 경우
 - $\text{조정금액} = \text{당초단가} + \text{추가단가}$
- 당초 운반거리에 일부 변경되는 경우
 - $\text{조정금액} = \text{당초단가} - \text{축소단가} + \text{대체단가}$
- 당초 운반거리에 전부 변경되는 경우
 - $\text{조정금액} = \text{변경단가} - \text{당초단가}$



조정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 금액증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함
- 계약서의 제비율 적용(법정비율 내에서 적용)



감사합니다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전에 일부공종을 제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과정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낙찰 금액에 포함된 소방 공사는 계약체결 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2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준공대가 지급된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3 예정가격 산정 과서에 대한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계약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나 발주처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4 관급공사에서 낙찰율 산정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율이라 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5 장기계속공사에서 설계변경한 전차공사의 제비율 조정이 가능한지

산출내역상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6 발주기관이 일부공종을 제외하는 설계변경 가능여부

계약담당공무원이 T.A.B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7 예정가격 산정 과서에 대한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임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8 수의계약공사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당해공사의 이행중 공사 관련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임

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 노, 경 단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0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1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다른 경우 설계 변경가능 여부 및 단가적용

<<질의>> “○○신축공사” 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당초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신축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상 강관동바리(3개월 7.0m 이하, 2단 보강)로 적정하게 설계도니 것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단가는?

＜＜회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 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상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 3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2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설계변경사항은 설계서,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자여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3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 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한 바, 물량내역서에 1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 물량 산출기준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 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 대상의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도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제19조의2제2항 각호의 적용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4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지질상태가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로 설계되어 있으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1(원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파기의 방법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로 변경할 경우 본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서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 계약체결 및 관리관련 법규 해석 사례

15 설계변경에서 우선시공의 지시일 기준은

<<질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실정보고한 날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날 어느 날을 기준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우선시공 지시일자는 발주기관이 문서 또는 구두로 우선시공을 지시한 일자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우선시공 지시일이 언제인지는 동 규정, 발주기관의 지시문서 및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의 기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율을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4 예정가격작성 착오에 따른 운반비 조정가능 여부

<<질의>> 잔토 운반의 운반거리가 700m이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조사금액산정시 70km로 잘못 적용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회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의 증감이 없이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격 작성시 운반거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 내용 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임**

5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 당초설계서에 명확하게 정한 운반로가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취장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법규 해석 사례

6 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7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에서 설계서 재작성 비용의 부담주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다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경유한 경우 동일한 건의 대안입찰에 대한설계 없이 원안 설계만으로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기본설계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의 계약체결가능여부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4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당해 경쟁입찰의 성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특정입찰자자의 대안 설계가 불채택된 사유가 상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정 입찰자의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때에는 원안설계를 적용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 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산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

6 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7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질의**》》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중점부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액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 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종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8 대안입찰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오류가 설계변경 대상인지 여부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9 대안입찰공사에 있어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금액의 조정방법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함.

10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대안입찰안내서에 의거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유적시굴조사비가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다하여 유적시굴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조사,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형공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11 터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 법령의 제·개정 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 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12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동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